

교원신규임용규정

- 제 정 : 1994. 9. 1. □ 개 정 : 2012. 6. 29.
- 개 정 : 2000. 3. 1. □ 개 정 : 2013. 5. 15.
- 개 정 : 2006. 8. 1. □ 개 정 : 2019. 6. 18.
- 개 정 : 2011. 6. 30. □ 개 정 : 2019. 11.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 교원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채용 원칙) 본교 교원의 신규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 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분야 전공과 특수 경력자의 임용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임용기간) ① 신규임용 되는 교원 (이하 “신임교원”이라 함)의 임용기간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 된다.

②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발령 행위를 하지 아니 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조(임용계약)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1. 임용기간
2. 년 봉급액
3.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 당연 퇴직
4. 재임용 조건
5. 책임 강의 시간
6. 기타 임용 조건

제5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임용절차

제6조(총원계획 수립) 학과별 총원 규모 및 분야는 해당 학과의 의견, 법정 교원수,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7조(채용공고) ① 교원의 신규채용 공고는 전공분야, 모집예정 인원,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 국내외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한다.

② 채용분야의 지원자 경쟁률이 2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를 무효화하고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심사절차) ① 교원신규임용은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원신규임용 세부절차는 별표1을 따른다.

③ 서류심사,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채용분야별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면접심사는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의 2(서류심사) ① 채용심사위원 중 내부위원이 담당한다.

②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의거한 지원자격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채용후보자의 학력, 학업성적,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연구실적을 심사한다.

③ 증명서류 및 연구실적은 서류제출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된 것만을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한다.

제8조의 3(기초심사) ① 채용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한다.

② 채용심사위원 전원이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채용심사에서 탈락한다.

제8조의 4(전공심사) ①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한다.

② 채용심사위원 전원이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이 미흡하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채용심사에서 탈락한다.

제8조의 5(면접심사) ① 전공심사까지 통과한 채용후보자 중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을 심사한다.

③ 면접심사위원회는 각 채용후보자의 전공심사까지의 누적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채용분야의 학과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채용 분야의 전공과 관련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1이

상은 본교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 ②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0이상은 채용 분야 학과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 ④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0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수초빙지원서 (본교양식)
 - 2. 학위 및 성적증명서
 - 3.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 목록
 - 4.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 실적물
 - 5. 경력 및 재직증명서
 - 6. 박사 및 석사 학위논문 (해당 학위 소지자에 한함)
 - 7. 기타 채용 공고에 명시된 증빙서류
-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출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① 심사항목과 배점 등 전체 심사기준은 별표 2의 신규임용심사기준표를 따른다.

- ② 서류심사는 별표 3의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 ③ 기초및 전공심사는 별표 4의 기초 및 전공 심사 조서에 따라 평가한다.
- ④ 면접심사는 별표 5의 면접심사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12조(임용제청) ① 총장은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에 대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신규임용 동의여부를 의결한다.
-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에 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 3 장 신임교원의 신분

제13조(신분) ①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교 전임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 ②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4-1-4 교원신규임용 규정

의사에 반하여 해직,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수) 신임교수의 보수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 봉급을 정한다.

제15조(퇴직금) 신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 연금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연구실 지원 등) ① 신임교원에게는 임용기간 중 전용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연구에 필요한 경우 학교 소유(명의)의 실험 기계·기구 및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기간제재임용 원칙) 신임교원은 임용기간 중의 업적이 전임교원 기간제재임용 평정표의 최저기준에 미달되거나 본교 교원으로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임용 한다.

제18조(재직기간 산정) 신임교원이 본교 교원으로 기간제재임용 된 경우 신임교원으로 재직기간은 재직 년 수에 산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 및 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원신규임용 세부 절차

순번	절차	내용	담당	관련 법령
1	교원 채용계획	채용계획 및 학과의 의견 수렴 등 교원 채용계획 확정	총장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제52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2	채용공고	일간신문·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마감일 15일 이상 공고	총무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3	서류심사	지원자격, 진위, 적법 여부 등 심사 ※ 채용심사위원 중 내부위원이 담당한다.	채용 심사 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4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심사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본교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5	전공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 심사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본교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6	면접심사	채용 후보자의 인성 등에 대한 심사 ※ 면접심사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면접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채용분야 학부(과)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면접 심사 위원회	
7	선정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총장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8	심의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교원인사 위원회	
9	제청	총장은 학교법인에 신규임용을 제청한다.	총장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10	확정	이사회는 신규임용 제청자에 대한 의결 후 결과를 대학에 통보 한다.	이사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11	보고	학교법인은 7일 이내에 관할청에 임용보고 한다.	법인	-사립학교법 제54조

(별표 2)

신규임용심사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	구 분		점수	비 고
서류심사	학 력	10%	<input type="checkbox"/> 박사취득	10	※ 외국학위취득자=1.2배 ※ 학위취득예정증명서는 취득으로 봄
			<input type="checkbox"/> 박사수료	7	
			<input type="checkbox"/> 석사취득	5	
			<input type="checkbox"/> 학사취득	3	
	학업성적	10%	<input type="checkbox"/> 4.0 이상	10	※ 학사, 석사, 박사 성적 합산 평균 평점 (4.5 만점 합산 기준)
			<input type="checkbox"/> 3.5 이상	8	
			<input type="checkbox"/> 3.0 이상	6	
			<input type="checkbox"/> 2.5 이상	4	
			<input type="checkbox"/> 2.5 미만	2	
	교 육 경 력	5%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5	※ 시간강사 교육경력 환산 <주당시간> - 5시간 미만 :30% - 6시간 : 40% - 7시간 이상 : 50%
			<input type="checkbox"/> 4년 이상	4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3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2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1	
	산업체 경 력	5%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5	※ 중소기업체 이상 (단, 전문직 관련업체는 예외임)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4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3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2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1	
	연구실적	20%	<input type="checkbox"/>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대상		20
기초심사	10%	모집대상 전공일치 여 부	<input type="checkbox"/> 일치	10	※ 최고·최저 성적 제외한 중간 성적 반영 ※ 불일치 판정 시 탈락
			<input type="checkbox"/> 유사	5	
			<input type="checkbox"/> 불일치	0	
전공심사	10%	전공의 학문적 우수성	<input type="checkbox"/> 우수	10	※ 최고·최저 성적 제외한 중간 성적 반영 ※ 미달 판정 시 탈락
			<input type="checkbox"/> 보통	5	
			<input type="checkbox"/> 미달	0	
면 접	30%	<input type="checkbox"/> 심사표 평균점수		30	※ 별표 4 참조
계	100%				

(별표 4)

기초 및 전공 심사 조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지원학과		지원전공	
학 위		제출 연구실적	%
심 사			
구 분	심 사 소 견	판 정	
기 초 심 사	<input type="checkbox"/> <u>지원자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일치 여부</u>	일 치 ()	
		유 사 ()	
		불 일 치 ()	
전 공 심 사	<input type="checkbox"/> <u>지원자 전공의 학문적 우수성</u>	우 수 ()	
		보 통 ()	
		미 달 ()	
<p>위와 같이 심사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심사자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소속: 직 급: 전 공: 성 명: </div>			
<p>수원과학대학교총장 귀하</p>			

(별표 5)

면 접 심 사 평 가 표

모집학과(지원전공):

접수 번호	성 명	평가항목 (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평가)					계 (30)	비 고
		교원으로 서의자질	조직의 이해와 대인관계 및 인성	강의 및 연구능력	학생지도 능력	어학 능력		
종합의견:								

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인)